



# 신고 · 세금

주소 변경 등의 신고나 세금 납부

구청에 간다



p24

주민표 (주민 기록)



p27

출생 · 사망 등 신고



p28

체류카드 · 특별 영주자  
증명서



p27

개인 번호 통지서와  
마이 넘버 카드  
(개인 번호 카드)

p31

인감등록



p30

편의점 교부 서비스



p31



세금을 지불한다

p32

주민세 · 소득세 ·  
확정신고

p33

# 구청에 간다

## ●신주쿠 구청

업무일 : 월 ~ 금요일 ( 공휴일 · 12 월 29 일 ~ 1 월 3 일 제외 ), 넷째 주 일요일

업무시간 : 8:30~17:00

※ 화요일은 19:00 까지 , 넷째 주 일요일은 09:00~17:00( 다른 기관과의 관계로 취급하지 않는 사무가 있습니다 . 자세한 것은 각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 )

구청은 각종 수속을 접수하고 있으며 각 창구에서는 일본어로 대응합니다 . 가능한 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오십시오 . 신주쿠 구청 1 층에는 외국인상담창구가 있습니다 . 궁금한 일이 있으면 상담하십시오 .

구청의 전화번호는 03-3209-1111 입니다 . 먼저 교환원이 일본어로 응답합니다 . 일본어로 천천히 용건 또는 내선번호를 말씀하십시오 . 교환원이 해당 담당계로 연결해 드립니다 .

## ●특별 출장소

업무일 : 월 ~ 금요일 ( 공휴일 · 12 월 29 일 ~ 1 월 3 일 제외 )

※특별 출장소에서는 넷째 주 일요일은 업무일이 아닙니다 .

업무시간 : 8:30~17:00

※ 화요일은 19:00 까지 . ( 취급하지 않는 사무가 있습니다 . 자세한 것은 각 특별 출장소에 문의하십시오 . )

여러분과 밀접한 창구로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의 수납 , 모자건강수첩의 교부 , 구 · 도영주택의 신청서 교부 등의 사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구청 본청사의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의 창구를 방문해 주십시오 .

· 통역이 필요한 경우

※10 명 이상의 단체로 신고할 때는 구청에 방문하기 전에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 ☎ 03-5273-3601 ) 에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 신주쿠 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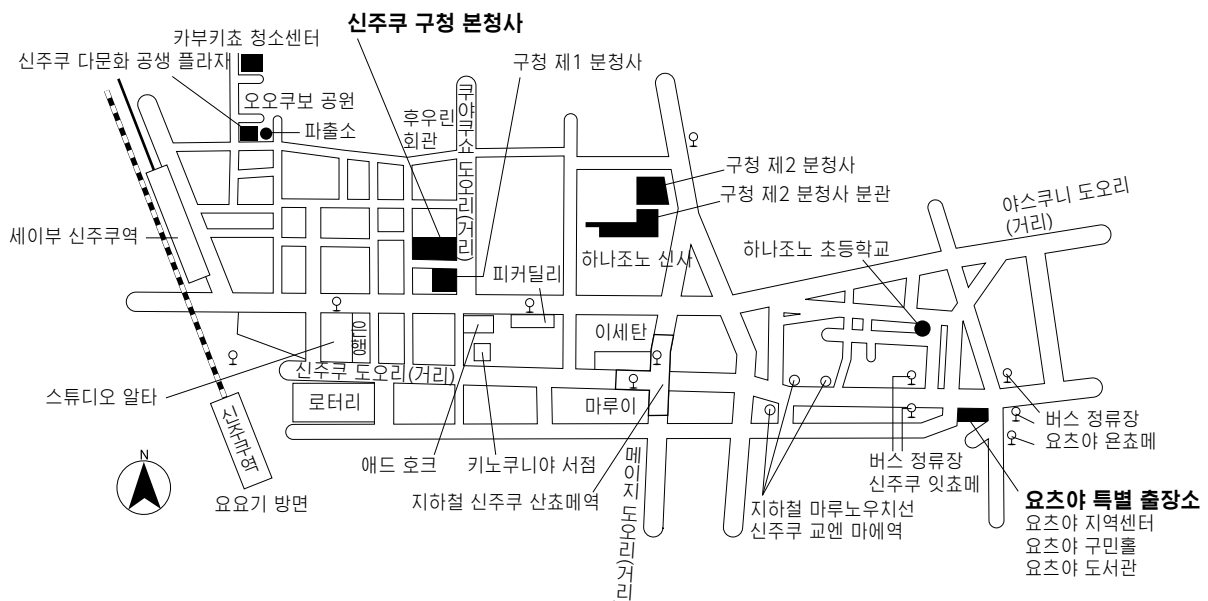
☏ 신주쿠구 카부키초 1-4-1

☎ 03-3209-1111

## 요츠야 특별 출장소

☏ 신주쿠구 나이토우마치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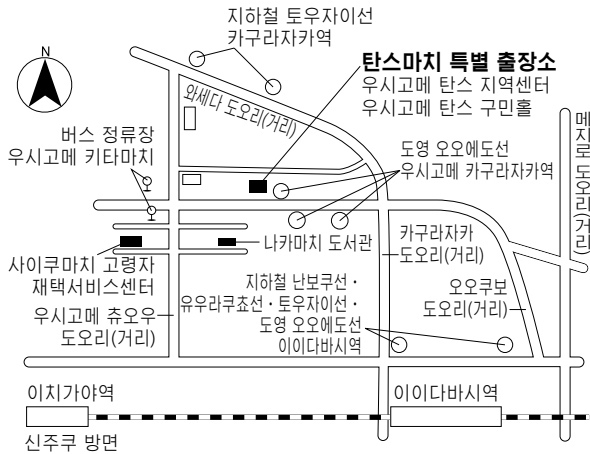
☎ 03-3354-6171



## 탄스마치 특별 출장소

신주쿠구 탄스마치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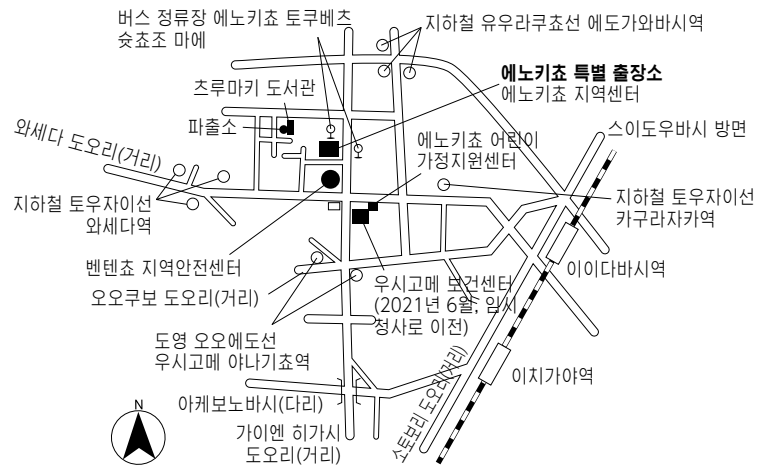
03-3260-1911



## 에노키쵸 특별 출장소

신주쿠구 와세다마치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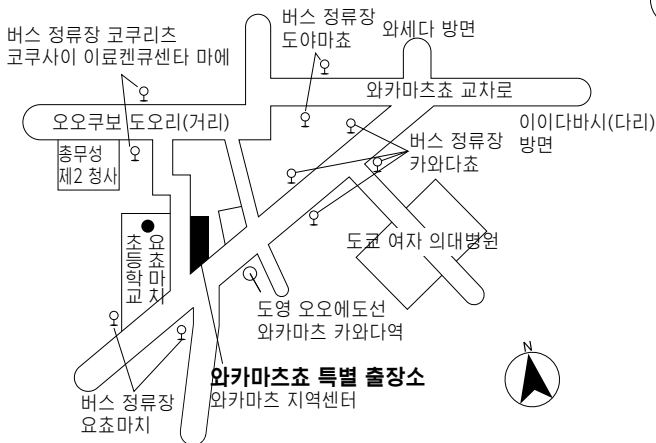
03-3202-2461



## 와카마츠쵸 특별 출장소

신주쿠구 와카마츠쵸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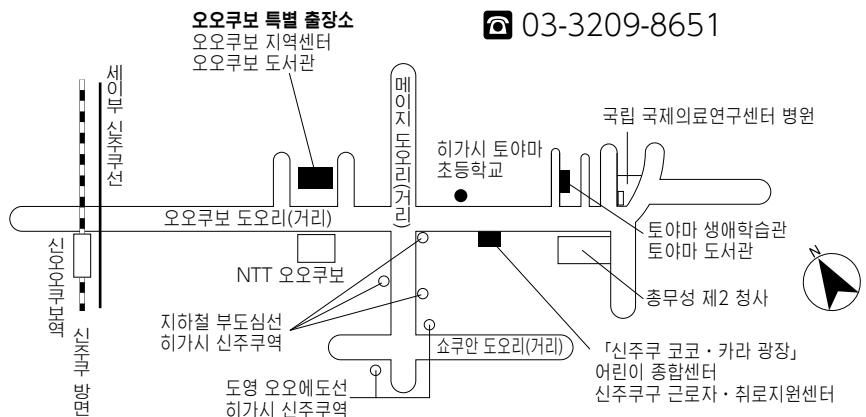
03-3202-1361



## 오오쿠보 특별 출장소

신주쿠구 오오쿠보 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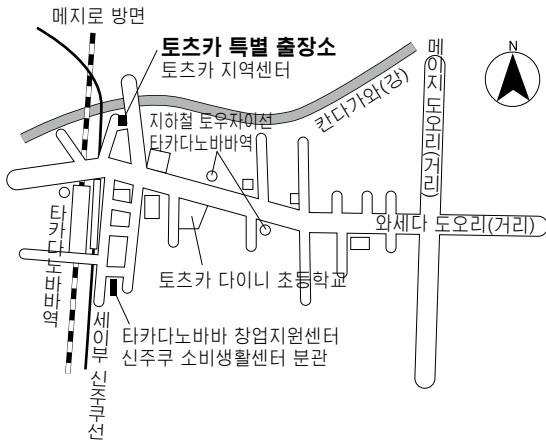
03-3209-8651



### 토츠카 특별 출장소

신주쿠구 타카다노바바 2-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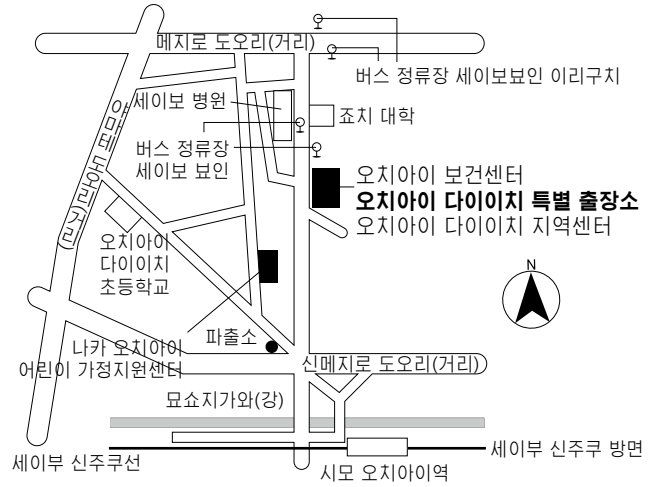
03-3209-8551



### 오치아이 다이이치 특별 출장소

신주쿠구 시모 오치아이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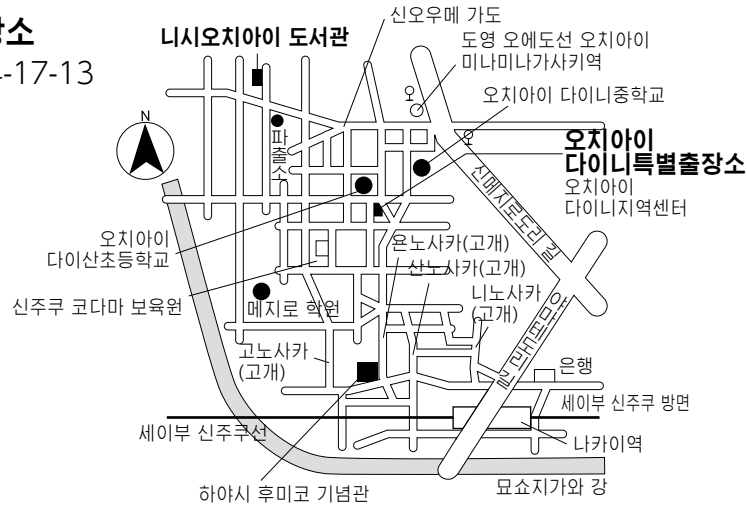
03-3951-9196



### 오치아이 다이이치 특별 출장소

신주쿠구 나카 오치아이 4-1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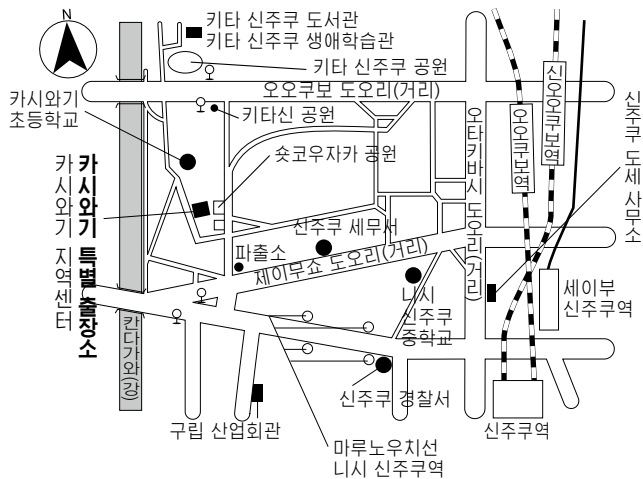
03-3951-9177



### 카시와기 특별 출장소

신주쿠구 기타 신주쿠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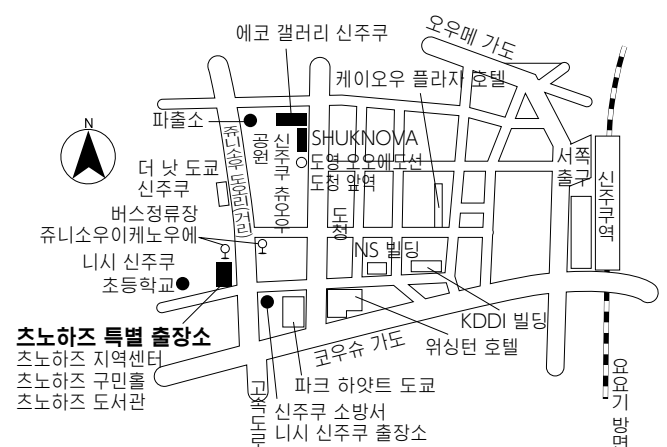
03-3363-3641



### 츠노하즈 특별 출장소

신주쿠구 니시 신주쿠 4-33-7

03-3377-4381



## 주민표 ( 주민 기록 )

###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각 특별 출장소

입국 후 전입 신고 및 중장기 체류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의 신고, 통역이 필요할 때, 또는 10명 이상의 단체로 신고를 할 때는 구청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외국인 주민 ( 체류카드 교부 대상자 및 특별 영주자 등 ) 에게도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주민표는 주소, 세대 ( 함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집단 ) 및 세대주 ( 세대를 대표하는 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심이 되는 분 ) 등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인감 등록·국민건강보험·세금 등의 기본이 됩니다.

#### ● 주민표 대상자

- 중장기 체류자 ( 체류카드 교부 대상자 )
- 특별 영주자
- 일시 비호 허가자 또는 임시 체류 허가자
- 출생에 따른 경과 체류자 또는 국적 상실에 따른 경과 체류자

상기 이외의 외국인에게는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 ● 주소 변경 신고

주소 및 세대 구성 등에 변경이 발생한 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 주십시오. 대리인 ( 본인과 동일 세대인 분 제외 ) 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구의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신고는 무료입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폐지된 외국인 등록 수속과 다릅니다. 특히 구외나 국외로 이사할 때는 사전에 신주쿠구에서 「전출 신고」 를 해 주십시오.

주민표 신고 종류 및 필요한 서류 등은 29 페이지의 일람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 ● 주민표 사본 등 교부

주민표 사본 또는 주민표의 기재사항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본인 확인 서류 ( 체류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 ) 를 지참하여 청구해 주십시오.

대리인 ( 본인과 동일 세대인 분 제외 ) 이 청구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구의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우편을 통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수수료는 1 통 300 엔입니다.

※ 주민표 사본은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1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자동 교부기 서비스는 2020년 3월 말에 종료됩니다.

## 체류카드 · 특별 영주자 증명서

 법무성 출입국체류관리청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0570-013904

(IP 전화 · PHS · 해외에서는  03-5796-7112)

#### ● 체류카드에 관한 수속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체류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한 경우
-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경우
- 「기술」 등의 취로자격 및 「유학」 등의 공부를 목적으로 한 자격인 분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 「일본인 배우자」 및 「가족 체류」 등의 체류자격인 분으로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은 위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관한 수속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주민기록계에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 일본에서 태어나고 특별 영주자 허가 신청을 할 경우
-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은 상기 출입국체류관리청 또는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 03-5273-3601) 로 문의해 주십시오.

### ●외국인등록증명서의 교체

외국인등록법 폐지 (2012년 7월 9일)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일정 기간 새로 생긴 「특별 영주자 증명서」, 「체류카드」로 간주되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2015년 7월 8일까지 외국인등록증명서에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체류카드로 교체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교체하는 기한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카드

가까운 지방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 종장기 체류자인 분...원칙적으로 2015년 7월 8일까지 교체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 ○특별 영주자 증명서

수속은 구청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에서 밟아 주십시오.

- 16세 미만인 분...16세 생일까지
- 16세 이상인 분으로 외국인 등록의 차기 확인 (교체) 신청 기간이 2015년 7월 9일 이후인 분...외국인등록증명서의 차기 확인 (교체) 신청 기간 시기인 생일까지
- 상기 이외의 분...원칙적으로 2015년 7월 8일까지 교체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 출생 · 사망 등 신고

### ☎ 호적주민과 호적계

#### ●호적

호적이란 일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 및 관계, 배우자 등의 혈연적인 신분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여 공증하는 것입니다.

#### ●호적의 신고

외국인 여러분도 일본에서 출생 · 사망한 경우는 구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 (결혼) · 이혼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무료입니다.

필요서류 등은 문의해 주십시오.

#### ●출생신고

태어난 후 14일 이내에 태어난 장소 또는 신고인의 현주소가 있는 관공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십시오.

또한, 다음과 같은 신고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 출생후 30일 이내에 도쿄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체류자격의 취득허가를 신청
- 본국과 관련된 수속 (여권 신청 등)

※부모님 또는 어느 한 분이 특별 영주자로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의 특별 영주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주민기록계에 신청해 주십시오. 이때 출생신고 수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 03-5273-3601) 에 문의해 주십시오.

#### ●사망신고

사망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망한 장소 또는 신고인의 현주소의 관공서에서 친족이나 동거자가 신고하십시오.

## 외국인 주민의 주소 변경 신고 일람

| 신고의 종류                                                          | 신고기간                    | 신고에 필요한 것 (원본을 지참해 주십시오)                                                                                                                                                                                           |
|-----------------------------------------------------------------|-------------------------|--------------------------------------------------------------------------------------------------------------------------------------------------------------------------------------------------------------------|
| 입국 후 전입 신고<br>(국외에서 와서 구내에 살기 시작한 경우)                           |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 체류카드, 여권, 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br>※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중장기 체류자 등이 된 경우의 신고<br>(구내에 거주하는 단기 체류자 등이 중장기 체류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 중장기 체류자 등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 ※재입국한 경우는 전입자 전원의 여권이 필요합니다.<br>★이와 같은 신고는 구청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의 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
| 다른 시구정촌(市区町村)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br>(구외에서 이사를 온 경우)                   | 이사를 온 날부터 14일 이내        | 전출 증명서, 체류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이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에게 속한 분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마이 넘버카드(개인 번호 카드)·주민기본대장카드(소지한 분)<br>※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이사 신고<br>(구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 이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 체류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가입한 분), 마이 넘버카드(개인 번호 카드)·주민기본대장카드(소지한 분)<br>※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전출 신고<br>(구외 및 국외로 이사를 할 경우)                                    | 이사를 하기 전                | 체류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국민건강보험증(가입한 분), 마이 넘버카드(개인 번호 카드)·주민기본대장카드(소지한 분), 인감 등록증(등록한 분)<br>※세대주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새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br>★전출 신고는 우편 및 마이너 포털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 세대 변경 신고<br>(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세대를 분리하거나 통합한 경우)                      |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체류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가입한 분)                                                                                                                                       |
| 세대주와의 관계 변경 신고<br>(외국인 주민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호적 신고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                         |                                                                                                                                                                                                                    |

※ 통역이 필요할 때 10명 이상의 단체로 신고를 할 때는 구청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에 사전에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 신고 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신고인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체류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를 지참해 주십시오. 대리인(본인과 동일 세대인 분 제외)이 신고를 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가 외국어인 경우는 번역자를 명시한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 국외로부터의 전입 신고와 중장기 체류자가 된 경우의 신고는 화요일의 창구 연장시간대(17:00~19:00)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성수기(3월, 4월, 7월, 9월, 10월)에는 창구 혼잡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8:30~17:00) 내에도 수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주쿠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인감등록

## 호적주인과 주민기록계 각 특별 출장소

### ●인감

일본에서는 싸인과 같은 의미로 계약의 경우 등에 인감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은 도장가게에서 주문해서 만들어, 구청에 자신의 도장의 인영을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 인감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인감등록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할 수 없는 인감

- 주민표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성, 이름, 통칭 또는 성명, 통칭의 일부를 조합시킨 문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
- 직업, 자격 등 다른 사항을 함께 표시하고 있는 것
- 고무인 등 변형되기 쉬운 재질의 인감
- 인영의 크기가 일변 8mm의 정사각형 내에 들어가는 작은 것, 또는 일변 25mm의 정사각형 내에 들어가지 않는 큰 것
- 인영이 분명치 못한 것, 문자 판독이 어려운 것
- 요철이 역전되어 있는 것
- 기타, 등록하는데 적당치 못한 것 (예: 테두리가 없는 것, 깨져 있는 것, 가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도장, 반지형 도장 등)

### ●인감등록

등록할 인감과 유효기한 내의 체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본인이 구청의 호적주인과 또는 특별 출장소에 신청하십시오. 당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령제한 (만 15세 이상인 분) 등 인감 등록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유효기한 내의 체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을 지참하지 않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는 조회서를 본인의 자택으로 우송합니다. 조회서가 배달되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신청한 창구를 방문해 주십시오.

- 회답서
- 등록할 인감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대리인인 경우는 등록하는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외에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인감도 필요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인감등록증 (카드) 을 교부합니다. 인감등록증 교부 수수료는 50 엔입니다.

### ●인감등록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인감등록증 (카드) 을 지참한 후 구청의 호적주인과 또는 특별 출장소의 창구에 청구해 주십시오. 교부 수수료는 1 통 300 엔입니다.

※인감등록증명서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1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인감등록)

- ①인감을 분실하거나 등록의 필요가 없어졌을 때→인감등록 폐지신고
- ②인감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소실되었을 때→인감등록증 망실신고
- ③인감등록증의 오손, 훼손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감등록증 교환교부 신청

### ●구외로 전출하는 경우 (인감등록)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출할 때는 인감등록증을 반납하십시오. 또한, 새 거주지에서 새로 인감등록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전출 전의 같은 주소에 전입하더라도 새로 인감등록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 ●출국하는 경우 (인감등록)

인감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을 할 경우, 인감등록은 출국과 동시에 말소됩니다.

다시 동일한 주소로 전입을 해도 새로 인감등록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는 분

단기 체류자 및 불법 체류자 등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는 인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편의점 교부 서비스

주민표 사본 · 인감등록증명서에 대해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주민세 증명서에 대해  
세무과 수납관리계

전국의 편의점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단말기 (멀티 복사기) 에서 「주민표 사본」, 「인감등록증명서」, 「특별구민세 · 도민세 · 삼림 환경세 과세 (비과세) 증명서」, 「특별구민세 · 도민세 · 삼림 환경세 납세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 (※)가 탑재된 마이 넘버 카드 (31 ~ 32 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용 전자 증명서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 ○이용 가능한 점포

세븐 일레븐, 로손, 패밀리 마트, 미니 스톱, 포플러의 각 점포 및 신주쿠 우체국 등 단, 키오스크 단말기 (멀티 복사기)가 설치된 점포에 한합니다.

### ○이용 시간

6:30~23:00(12월 29일 ~ 1월 3일과 시스템 점검 시 제외)

### ○교부 수수료

1 통 200 엔 (창구에서는 300 엔)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란 인터넷을 열람할 때 등에 이용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이 나 포털」 로그인 및 편의점 교부 서비스 등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번호 통지서와 마이 넘버 카드 (개인 번호 카드)

###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 ●개인 번호 통지서란

일본 국외에서 전입하거나 출생 등으로 새로 일본 국내에 주소 등록을 한 분에게 마이 넘버 (개인 번호)를 기재한 「개인 번호 통지서」를 간이 등기 (전송 불필요)로 우편 발송합니다. 개인 번호 통지서의 발행과 우편 발송은 전국의 구시정촌에서 위임을 받은 지방 공공 단체 정보 시스템 기구 (J-LIS)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번호 통지서가 도착하면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개인 번호 통지서」는 마이 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마이 넘버 카드 (개인 번호 카드)란

○얼굴 사진이 첨부된 IC 카드로, 앞면에 이름 · 주소 등이, 뒷면에 마이 넘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얼굴 사진의 게재는 없습니다.

○IC 칩에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를 통한 전자 증명서가 표준 탑재됩니다. 전자 증명서는 「마이 나 포털」 로그인 및 편의점 교부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의 첫 교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만, 재교부 수수료는 800 엔으로 전자 증명서의 재발행을 포함한 경우는 별도로 200 엔이 부과됩니다.

○주소 및 이름 등을 변경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또한 출입국체류관리청의 허가가 내려져 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마이 넘버 카드의 유효 기한까지」 구의 창구에 신고하여 카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해 주십시오.

#### ●마이 넘버 카드의 신청 · 교부

##### ①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개인 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와 교부 신청서





송부용 봉투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나 봉투는 호적주민과 또는 특별 출장소에서 수령하거나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신청서에 얼굴 사진을 붙이고 마이 넘버 등의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 신청서 송부용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습니다.

※통지 카드에 포함된 신청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명·주소 등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된 부분을 자필로 수정한 후 신청해 주십시오.

## ②인터넷· 시내에 있는 증명 사진기로 신청하는 방법

개인 번호 통지서에 동봉된 신청서의 ID 또는 2 차원 코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개인 번호 통지서에 동봉된 신청서가 없는 경우는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호적주민과 또는 특별 출장소에서 ID가 기재된 신청서를 청구해 주십시오.

인터넷의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스마트 폰으로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한 후 아래 WEB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화면 표시에 따라 신청해 주십시오.

시내에 있는 증명 사진기의 경우는 증명 사진기의 터치 패널에서 「개인 번호 카드」를 선택하여 화면 표시에 따라 신청해 주십시오.

☞ <https://www.kojinbango-card.go.jp/ko/>

## ③마이 넘버 카드 온라인 신청 서포트 서비스에 의한 신청

구청 본청사 1 층에서 구의 담당자가 신청에 필요한 사진 촬영부터 신청까지를 도와드립니다. 신청에는 전용 「신청서 ID」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체류카드 등)를 지참하여 호적주민과 창구에서 「신청서 ID」가 기재된 신청서의 발행을 의뢰해 주십시오.

신청 후 개인 번호 카드 교부 통지서를 자택에 우송하므로 인터넷 또는 전화로 수령 일시를 예약한 후 교부 장소로 수령하러 방문해 주십시오.

수령 시에는 개인 번호 카드 교부 통지서와 본인 확인 서류(체류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를 지참해 주십시오. 상기 이외의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호적주민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 ●마이 넘버 카드 특급 발행에 대해

특별히 신속한 교부가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1 주일 이내에 마이 넘버 카드가 자택으로 배달되는 시스템입니다. 구청 본청사 1 층의 호적주민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 세 미만인 분, 해외에서 전입한 분, 마이 넘버 카드를 분실한 분 등으로 제한됩니다. 대상자 및 신청 가능한 기간, 필요 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 03-5273-3601)로 문의해 주십시오.

## ●주민기본대장카드에 대해

마이 넘버 카드의 발행에 따라 주민기본대장카드의 발행은 201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발행한 주민기본대장카드는 유효 기간 내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마이 넘버 카드의 카드 교부 시에 회수합니다. 주민기본대장카드와 마이 넘버 카드 모두를 소지할 수는 없습니다.

# 세금을 지불한다

## ■세금의 목적과 종류

### ☞ 세무과 세무계

##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우리 일상생활과 여러가지 형태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외교, 사회기반 정비, 경제정책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되는 일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교육, 보건위생, 경찰, 소방 등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밀착된 일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세금」이란 형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회비와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특별구민세 · 도민세) 와 소득세

세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세금이 주민세와 소득세입니다.

지방세인 주민세와 국세인 소득세는 모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금액의 인정 등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가 그 해의 소득에 과세되는데 비하여 주민세는 전년의 소득에 대해 다음 년도에 과세된다는 점이나 세율 등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 주민세 · 소득세 · 확정신고

### ☎ 주민세에 대하여

세무과 과세 다이이치 · 다이니 가카리

### ☎ 주민세 증명서에 대해

세무과 수납관리계

### ☎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요츠야 세무서 ☎ 03-3359-4451

신주쿠 세무서 ☎ 03-6757-7776

## ●주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

원칙적으로 매년 1 월 1 일 현재, 해당 지자체 (시구청촌) 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국적 불문).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1 월 1 일 현재 주민 등록이 되어 있던 시구청촌에 납부합니다.

##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분

전년도 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분에 대해서는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준액은 본인의 연령이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 ●주민세의 신고

매년 3 월 15 일까지 전년도의 소득을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십시오. 다만, 세무서에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분, 급여소득자인 분으로 회사 등이 급여 지불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있는 경우 등은 구청 세무과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민세의 계산방법

주민세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소득할: 전년도의 소득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 ●주민세의 납부방법

개인의 주민세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징수

구청으로부터 자택 앞으로 송부 (6 월 초순) 되는 납세통지서에 동봉된 납부서로 연 4 회로 나누어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납부 장소는 구청 · 특별 출장소, 은행 등의 금융기관, 우체국, 편의점입니다.

그 밖에 페이지 (Pay-easy), 신용 카드 납부, 스마트폰 결제 앱, 전자 화폐 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수납관리계에 문의해 주십시오.

☎ [http://www.city.shinjuku.lg.jp/hoken/file04\\_04\\_00001.html](http://www.city.shinjuku.lg.jp/hoken/file04_04_00001.html)

○급여에서 특별징수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업소가 매월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구청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라도 보통징수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 외에 공적 연금에서의 특별징수제도가 있습니다.

## ●출국시의 수속

주민세 과세 대상자가 납세통지 (6 월 초순) 전에 출국하는 경우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예납 (사전에 주민세를 납부하는 제도) 하도록 하십시오.

납세통지를 받은 후에 출국하는 경우는 납세관리인을 정하거나 전액을 납부하십시오.

## ●주민세 과세 (비과세) 증명서 · 납세 증명서 취득에 대해

창구에 방문하는 분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체류카드 · 마이 넘버 카드 · 건강보험증 등) 를 지참하여 세무과 · 특별 출장소 창구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교부 수수료는 1 통 300 엔입니다.

※ 창구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

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납관리계에 문의해 주십시오.

※편의점 교부 서비스도 있습니다 (31 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수납관리계에 문의해 주십시오.

 [http://www.city.shinjuku.lg.jp/hoken/file04\\_02\\_00001.html](http://www.city.shinjuku.lg.jp/hoken/file04_02_00001.html)

###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본인의 1 년간의 모든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의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액을 계산합니다.

### ●확정신고에 대해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급여소득자인 경우, 소득세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그 이외의 사람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자신의 소득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세법에 따라 소득과 세액을 올바르게 계산한 후 납세하는 소위 신고납세제도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자세한 것은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nta.go.jp/>

